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11. 10 선고 2020가단21974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
담당변호사 김성진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미영

피 고 A
소송대리인 B
변 론 종 결 2021. 10. 13.
판 결 선 고 2021. 11. 10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. 12. 27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9,281,8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9,281,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소외 C 유한회사는 소외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236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, 그에 따라 “B는 C 유한회사에게 76,953,538원과 그 중 23,398,277원에 대하여 2016. 10. 13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‘이 사건 피보전채권’이라 한다).

나. C 유한회사는 2018. 1. 26.경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양도하였고,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.

다. 2020. 8. 18. 현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원금 25,666,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00,574,158원이 남아 있다.

라. B는 2016. 11. 27.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, 아버지인 망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자신의 상속분인 2/11 지분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(이하 ‘이 사건 협의분할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였고, 피고는 2017. 2. 6.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마.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B는 채무초과 상태였다.바.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E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3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17. 4. 12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

[인정근거: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1,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마산합포구청 세무과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,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, 이 법원의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/11 지분을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,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따라서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항변에 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B의 부채관계를 알지 못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한다.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선의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,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,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바(대법원 2006. 7. 4.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.

다. 취소 및 반환의 범위

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,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,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(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41490 판결, 1999. 11. 9. 선고 99다50101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졌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

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원물반환 대신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바,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, E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,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. 5. 28.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15,050,4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E조합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9,000,000원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, 취소 및 가액반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$19,281,890원 \{ = (119,050,400원 - 9,000,000원) \times 2/11, 원 미만 버림 \}$ 이 된다.

라. 소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로서 19,281,89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9,281,8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%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남세진

목록(부동산의 표시)

1.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136㎡

2.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

[도로명주소]

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

세멘 보록크조와즙 단층주택 38.81㎡

부속

세멘 보록크조 스라브즙 단층주택 26.88㎡

